

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取得承認案

審査報告書

992. 7. .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 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2. 6. 20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'92. 6. 25
- 다. 상정일자 : 제11회 임시회(폐회중)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('92. 7. 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金興權)

가. 제안이유

- 구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,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'92. 7. 1. 2단계 자동차등록업무 구청이관에 따른 창구 개설 (시민봉사실 2개소 추가 설치)
- 소요예산 (기확보 : 본청경비) : 1,829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金熙中)

'92. 7. 1. 2단계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창구개설에 필요한 (시민봉사실 설치)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취득하여야 하는데

첫째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1항의 규정을 보면,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,

둘째, 우리구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2(중요물품의 범위)의 본문을 보면, 영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

셋째, 영 제113조 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2항의 규정을 보면,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,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의 규정을 보면,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.

따라서, 컴퓨터(641천원) 및 프린터기(522천원)는 단가가 5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시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보며 소요예산 1,829천원은 본청예산으로 기확보되며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대로 가결

(재적의원 11명

- 출 석 10명
- 찬 성 10명
- 반 대 없음)

19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處分承認案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6월 26일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승인이유

- 지방판용차량 운영개선지침 및 시장지시사항 (자치구 의전용차량교체)에 의거, 정부 시책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형승용차를 감소한 중형승용차로 교체 사용코자 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- '91. 11. 25구입 사용중인 구청장 의전용차량(로얄프린스2.0)을 구의회 승인후 매각 처분하고 지방판용차량 운영개선 지침에 의거 추후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구청장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
- 매각처분대금 : 9,000천원 (한국감정원 감정가)

3. 승인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.

'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處分承認案

1. 현 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처 분 요 청		승 인		불 승 인	
	품목 수량	금 액 (감정가)	품목 수량	금 액 (감정가)	품목 수량	금 액 (감정가)
계	차량 (프린스) 1	9,000				
처 분	차량 (프린스) 1	9,000				

2. 처분내역

(단위: 천원)

연번	구 분 품 목	구 정 수		정수물품처분 승인요청					
		실수	부족수	품 목	부서별	매 각 처분수	단 가	감정가	처분사유
1	차 량	110		로 알 프린스 (2.0)	총무과	1	16,200	9,000	관용차량 운영 개선지침 및 에너지절약

3. 관련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35조

제 35 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 및 폐지
2. 예산의 심의·확정
3. 결산의 승인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5.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·관리 및 처분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7.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처분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10.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

제 113 조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·정수의 책정 및 배정, 내용기간·대체성·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·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의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제상하여야 하며,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제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.

19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取得承認案

의안 번호	8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6월 20일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청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써 파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파다 보유로 인한 물자, 예산 낭비를 방지코자 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- '91. 7. 1. 2 단계 자동차등록업무 구청이판에 따른 창구 개설 (시민봉사실 2개소 추가 설치)
- 소요예산 (기확보 : 본청비) : 1,829천원

3. 승인근거

지방자치법 제35조,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

'92年度서울特別市永登浦區定數物品取得承認案

1.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승인요청		승인		불승인	
	품목 수량	금액	품목 수량	금액	품목 수량	금액
계	2 3	1,829				
신규취득	2 3	1,829				

2. 신규취득

(단위: 천원)

연번	구분 품목별	구정수		승인요청							
		실수	부족	부서별	기준			수량	단가	금액	취득사유
					정수	실수	부족				
1	컴퓨터	174	2	지역 교통과	3	1	2	2	641	641	자동차등록 업무창구개설
2	프린터기	182	1	"	2	1	1	1	522	522	"